

국제 표준화회의 동향

ITU-T SG3회의 참가 보고

(스위스 제네바, '93. 6. 14~6. 18)

목 차

1. 회의의 일반개요
2. SG3 총회 주요 내용
3. RTG에 대한 Ad Hoc Meeting
4. WP별 Ad Hoc Meeting
5. 차기회의 일정
6. 참석소감

허 춘 환

ITU-T 국내연구단 3연구위원회 위원

데이콤 국제통신사업본부 대리

I. 회의의 일반개요

- 국내참가자 :
 - 테이콤 국제통신사업본부 대리 허춘환
 - 테이콤 전용회선사업본부 대리 이석재
- 회의기간 : 1993. 6. 14~6. 18
- 회의장소 : 스위스 제네바 ITU본부
- 참가현황 : 60개국 160여명 참가
 - 한국은 테이콤에서 2명만 참가
- 회의목적
 - SG3(요금전담반)의 연구과제 및 방향 결정
 - SG3의 작업반 조직 및 연구과제 할당
 - 차기회의 개최일정 확정

II. SG3 총회(6. 14~6. 15) 주요내용

1. 의장단 소개 및 Agenda 채택

- 1993년 3월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1차 WTSC에서 선임된 SG3 의장단 소개
 - 의장 : 프랑스 B. ROUXELILLE
 - 부의장 : 일본 T. MATSUDAIRA, 네덜란드 JF. PAYMANS
- 의장단이 제시한 Draft Agenda와 TSAG 회의에서 제안한 Item 채택
 - 각 Study Group의 작업에 대한 작업방법 및 우선순위
 - Q.4/1, Q.20/3(Intelligent Network)에 대해 SG 1, SG 3, SG 11간에 공통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 ICG의 FPULLMT 연구, UPT, B-ISDN에 대한 연구에 SG3의 참여부
 - 이 경우 SG3의 관련 Working Part

에서 지명된 별도의 그룹이 참석키로 결정

2. SG3 관련 제1차 WTSC 주요 회의내용 설명

- 1989년~1992년의 연구기간동안 SG3가 연구한 보고서를 승인
- SG3와 Regional Tariff Group에서 제기한 새로운 권고안의 채택 및 혼권고안의 수정에 대한 승인
- 총회에서 SG3의 연구방법 및 RTG (Reginal Tariff Group)에 대해 논의된 사항
- 헬싱키 회의에서 채택된 권고안들은 1993년 말까지 책자로 출간 예정
- SG3가 제시한 1993년~1996년 동안의 연구과제 설명

3. ITU-T 작업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변경 설명

- 연구과제의 개발 : 국내의 전기통신 기술, 정책, 표준화등 그동향 또는 환경에 따라 동시대가 요구하는 연구과제를 개발해서, WTSC에서 최종 채택하여 해당연구반에 할당하면 연구반을 중심으로 회원(국)들이 해당 과제에 대한 기고서를 제출하며, 이러한 기고서를 기초로 권고가 승인된다.
- 권고승인 절차 규칙(Rules) : 매4년마다 개최되는 총회(Plenary Assembly)에서만 권고가 승인되던 규칙을 전기 통신기술의 급속발전에 부응하기 위해 4년이라는 기간을 단축시켜 일반적으로 총회기간 사이에 해당 연구반 회의를 개최할 때 승인하되, 예외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만 총회(WTSC)에서 승인하는 2단계의 “신속권고승인절차”로 개정

4. 연구반 및 분야별 상호보완 및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JCG, ICG에 대한 영역조정 설명

- 두 분야의 업무조정 원칙은 과제지향적임, 따라서 주어진 과제의 주제 범위내에서 더 육 세분화된 과제가 실시될 수 있으며, 각 업계획은 서비스 혹은 시스템의 개념으로 시작되고 전반적 망 또는 서비스 구조, 상호접속위한 정의의 개발을 포함
- JCG : TMN(Telecommunication Management Network), UPT(Universal Personal Telecommunication), 광대역 ISDN 등
- ICG : FPLMTS, ISDN, 위성분야의 표준화 업무

5. SG3의 WP 조직 및 연구과제 선정

- 조직별 연구주제 및 연구 책임자
 - WP 3/1 : 전용회선서비스 관련, H. GRUNFELD(호주)
- STUDY GROUP 3의 조직도 및 연구과제
 - 조직도 및 연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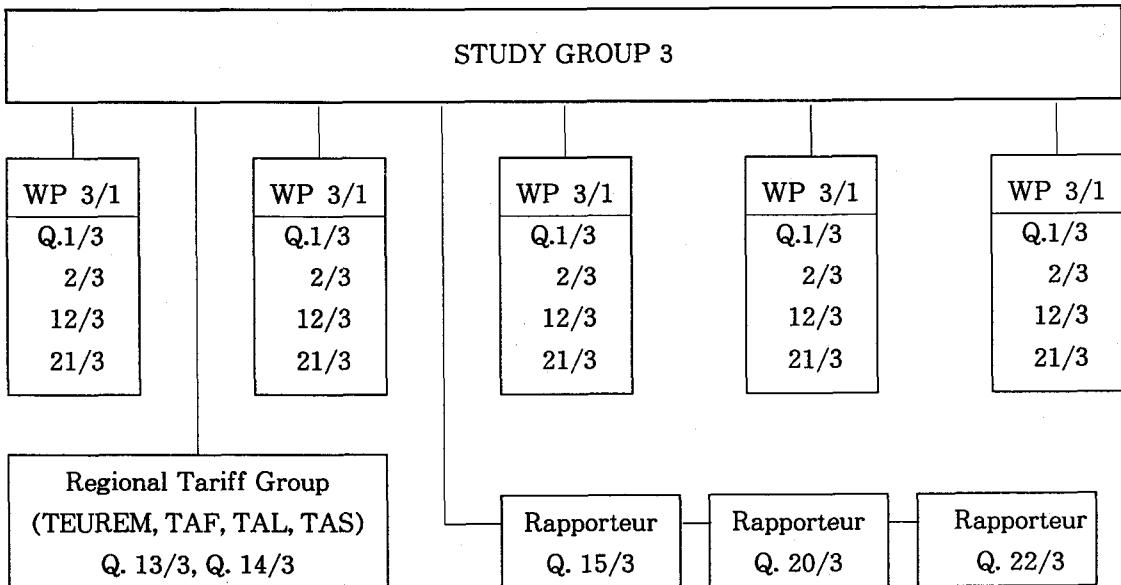
HELLING(스웨덴)

- WP 3/2 : ISDN 서비스 관련, E.J. EXTON(캐나다)
- WP 3/3 : NON-VOICE 서비스 관련, D.CASEY(미국)
- WP 3/4 : 음성 및 AUDIO-VIDEO 서비스 관련, J.PAYMANS(네덜란드)
- WP 3/5 : MOBILE 서비스, UPT 관련, W.LUCAS(영국)

레포터 그룹 설정

- 다른 분야와 중복되는 연구분야에 대한 레포터에 위임
- 요금정산 권리의 규칙 및 정의 : T. MATSUDAIRE(일본)
- I/N관련 요금 및 정산 원칙 : H. GRUNFELD(호주)
- GVNS 관련 요금 및 정산 원칙 : Y. KUBOTA(일본)

STUDY GROUP 3



- 연구과제별 내용

NO	연 구 과 제 명	관련권고
Q. 1/3	General principles for the lease of international private telecommunication circuit 국제 사설전기통신회선의 임대에 관한 일반원칙	D.1
Q. 2/3	Tariff principles for the lease of international private telecommunication circuit 국제 사설전기통신회선의 임대에 관한 요금원칙	D.3 D.8
Q. 3/3	General charging and accounting principles applicable to data communication on public N/W 공중망에서의 데이터통신에 적용되는 과금 및 정산의 일반원칙	D.10 D.30
Q. 4/3	General charging and accounting principles applicable to the telegram, Teletex, telemESSAGE, telex, facsimile and Videotex services 텔레그램, 텔리텍스, 텔레메시지, 텔렉스, 팩시밀리와 비디오텍스 서비스에 적용되는 과금 및 정산의 일반원칙	D.40 D.85
Q. 5/3	Charging and accounting principles in the international telephone service 국제전화서비스에서의 과금 및 정산원칙	D.140 D.150 D.155
Q. 6/3	Tariff principles for the occasional provision of circuits for international sound and television programme transmissions 국제 음향 및 TV 방송프로그램 전송 회선의 임시 규정에 대한 요금원칙	D.180
Q. 7/3	General tariff principles for telecommunications provided via mobile terminals 이동 단말기간에 제공되는 전기통신들의 일반 요금원칙	D.90 D.91 D.93
Q. 8/3	Charging and accounting principles to be applied to services defined expressly for the ISDNs 명확히 ISDN으로 정의된 서비스에 적용되는 과금 및 정산원칙	D.200
Q. 9/3	Charging and accounting principles to be applied to enhancements to existing services defined to take advantage of ISDNs capabilities ISDN의 발전가능성을 이용한 것으로 정의되어 현재에서 발전된 서비스에 적용되는 과금 및 정산 원칙	
Q.10/3	General charging and accounting principles for non-voice services provided by inter-working between the ISDN and existing public data N/W 현행 공중데이터망(PDNs)과 ISDN의 상호연동에 의해 제공되는 비음성 서비스를 위한 과금 및 정산의 일반원칙	D.250
Q.11/3	Tariff and accounting principles to be applied to permanent and reserved services provided by new technologies 새로운 기술에 의해 제공되는 고정과 예약서비스에 적용되는 요금 및 정산 원칙	

국제전기통신표준화소식

NO	연 구 과 제 명	관련권고
Q.12/3	General charging and accounting principles to be applied to non-mobil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ervices provided via satellite 위성을 통해 제공되는 고정된(non-mobile) 국제전기통신서비스에 적용되는 과금 및 정산의 일반 원칙	D.185
Q.13/3	Cost studies for determining the basic tariff components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s (telegraph, telephone, telex, data, etc) 전기통신서비스(전신, 전화, 텔레ックス, 데이터 등)의 기본요금요소들을 결정하기 위한 원가 연구	
Q.14/3	Cost studies for determining the basic tariff components in providing circuits for sound programme transmissions, television programme transmissions, leasing of sound programme circuits and leasing of television programme circuits 음성방송, 텔레비전방송용 회선제공의 기본요금요소들을 결정하기 위한 원가 연구	
Q.15/3	Terms and definitions for Recommendations dealing with tariff and accounting principles 권고안에서 다루는 요금과 정산원칙에 관한 용어의 정의	D.000
Q.16/3	General charging and accounting principles for the international videoconference service 국제화상회의 서비스에 관한 과금 및 정산의 일반원칙	D.188
Q.17/3	Charging and accounting principles to be applied to universal personal telecommunications UPT에 적용되는 과금 및 정산 원칙	New rec.
Q.18/3	General charging and accounting principles applicable to message handling services MHS에 적용되는 과금 및 정산 일반 원칙	D.35 D.36
Q.19/3	General charging and accounting principles applicable to public directory services 공중 디렉토리 서비스에 적용되는 과금 및 정산 일반 원칙	New rec.
Q.20/3	General charging and accounting principles for services and applications supported by the intelligent network 지능망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응용에 대한 과금 및 정산 일반 원칙	
Q.21/3	Study of the possible extension of Recommendation ITU-T D.7 to services to which one-stop shopping may be applied OSS(One Stop Shopping)이 적용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D.7권고의 확대 가능성 연구	D.7에 관련된 새로운 권고안
Q.22/3	Tariff and accounting principles for the Global Virtual Network Services(GVNSs) 범세계적 가상망 서비스에 대한 요금 및 정산 원칙	New rec.

III. RTG에 대한 Ad Hoc Meeting

1. 작업방향에 대한 기고문 검토 및 협의

- TAS(의장 P.WATT, 뉴질랜드) : TAS는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지역내의 다양성을 모두 고려한 적합한 COST 모델을 규정할 수 없음, 따라서 SG3에 기고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역내의 특수한 문제점부터 연구되어야 한다.
- TAF(의장 M. HAILE, 에디오피아) : TAF에 직면한 문제점 설명 및 Sub-regional group 조직 주창, 정산비용 분석에 대한 핸드북 제작 및 관련 세미나 개최등의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소요비용 지원 요구
- TEUREM(의장 G.REPICI, 이탈리아) : 현재의 환경이 과거와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 즉, 규제환경, 시장의 자유화등 전기통신 시장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이러한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TEUREM의 COST 연구 목적 일부수정 및 작업방법의 계속적인 수정이 필요
- TAL(의장 CORTAZAR GARCIA, 콜롬비아) :
 - 권고안 D.140을 고려한 Cost-oriented 방법론의 개발로 정산요율과 통화요금에 대한 통일화 필요
 - 선진국과 개도국의 원가차이는 ITU에서 수행된 연구자료 활용
 - 정산요율은 원가에 입각하여 조정, 통화요금은 점진적으로 인하

2. 협의결과

- 4개의 RTG는 향후 SG3와 더욱 긴밀한 관계의 필요성을 역설, 각 RTG의 활동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를 1994년 말까지 SG3에 제출토록 결정

- 작업 방법론(Methodology) 및 작업 프로그램은 통일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각 RTG의 지역의 특성, 규제, 목적의 특수성을 고려할때, 실제로 각각의 특성에 입각하여 작업이 추진될 수 밖에 없음.
- 서비스의 비용요소 결정, 일치된 국제정산요율 결정을 위해 적용되는 일반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ITU-TS의 요금 및 국제정산 관련 권고안을 참조해야함(D.140)

3. 수정권고안에 대한 승인

- TAS와 TAF에서 제안한 권고안 D.500R, D.501R, D.600R, D.601R의 수정전에 대해 SG3는 승인절차에 따라 만장일치로 합의함
- D.500R :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국가간 전화관련 서비스에 적용되는 정산요율
- D.501R :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국가간 텔레스관련 서비스에 적용되는 정산요율
- D.600R : 아프리카 국가간 전화관련 서비스의 정산요율 분배 및 징수요금의 결정
- D.601R : 아프리카 국가간 텔레스관련 서비스의 정산요율 분배 및 징수요금의 결정

IV. WP별 Ad Hoc meeting

1. WP 3/1 회의

- WP 3/1에 부여된 QUESTION 제고
- 과제별 작업방향 결정
 - Q.1/3 : 국제사설전기통신 회선의 임대에 관한 일반 원칙
 - 새로운 이용자의 요구사항 개발 및 국제 규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D.1의

수정

- Q.2/3 : 국제사설전기통신 회선의 임대에 관한 요금 원칙
→ 1989~1992년 연구기간 동안에 채택된 D.3에 대해서 현재의 기술발전과 상업적인 발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함.
- Q.21/3 : One Stop Shopping이 적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D.7권고의 확대 가능성 연구
→ Vsat, Videoconference, X.25, videotex와 같은 서비스에 확대 적용 가능성 고려 및 이와 관련 D.7권고의 수정 혹은 별도의 권고 제정 여부 연구

2. WP 3/2 회의

- WP 3/2에 부여된 QUESTION 제고
- 1992년 12월 Interregnum 미팅 결과 검토
- 관련 Liaison Statement의 숙고
 - SG 11의 Liaison에 대한 응답관련 사항 설명
- 과제별 작업방향 결정
 - Q.8/3 : ISDN서비스에 적용되는 과금 및 정산원칙
 - SG1, SG11, SG13에 의해 ISDN 분야가 연구됨. 이와 관련하여, 요금 및 정산원칙에 대한 새로운 권고안이 개발되어야 함. 또한 ISDN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Call시도시 적용요금과 같은 특별 사안에 대해서도 작업이 진행되어야 함.
 - Q.9/3 : 현재의 ISDN서비스에서 발전 서비스에 적용되는 과금 및 정산원칙
 - Frame Relay와 같은 패킷교환서비스, 자동 Credit Card 서비스, Re-

verse Charging, Freephone 서비스와 같은 향상된 서비스와 관련된 작업수행, 특히 이러한 작업은 레포터들, WP 의장들과 협의하여 이뤄져야 함.

- Q.10/3 : 공중데이터망과 ISDN의 상호 연동에 의해 제공되는 과금 및 정산의 일반원칙
 - 공중데이터망과의 성장과 ISDN의 점진적인 구현으로 이들 망간의 연관성이 커지므로서 조정작업 필요
 - 새로운 기술개발을 고려한 D.250권고를 검토하고 SG1, SG7, SG11, SG13과 함께 새로운 권고안 개발에 대한 작업 필요

3. WP 3/3 회의

- WP 3/3에 부여된 QUESTION 제고
- 다른 SG의 Liaison 설명
- 과제별 작업방향 결정
 - Q.3/3 : 공중망에서의 데이터통신에 적용되는 과금 및 정산원칙
 - 전 연구기간 동안 개발된 요금 및 정산원칙에 관한 권고에 프레임릴레이와 같은 몇개의 중요사안들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함.
 - Q.4/3 : 텔리그램, 텔리텍스, 텔레메세지, 텔렉스, 팩시밀리와 비디오텍스 서비스에 적용되는 과금 및 정산의 일반원칙
 - 마케팅력과 기술발전은 Telegraphic과 Telematic의 운영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D.40~D.85 권고가 현재의 기술 및 상업적 추세에 비추어 수정이 필요한지 검토되어야 함.
 - Q.18/3 : MHS에 적용되는 과금 및 정산 일반원칙

- X.400의 환경에서 새로운 적용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와관련 D.35, D.36의 검토 및 새로운 권고의 개발가능성 여부 검토
- SG1, SG7, SG13의 연구결과에 따라 연구범위 결정
- Q.19/3 : 공중 디렉토리 서비스에 적용되는 과금 및 정산 일반원칙
- X.500에서 서비스가 소개되고 있음.
- SG1, SG7, SG13와 함께 협조하여 이분야의 새로운 권고안을 우선순위로 개발

4. WP 3/4 회의

- WP 3/4에 부여된 QUESTION의 제고
 - D.140 권고의 ANNEX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 및 관점변경등 논의
- D.140의 ANNEX에 대한 토론
 - 시리아 기고문 검토 : 비용부문에 국제 교환시설물 비용과 연구개발비용 부문 삭제 및 직접비용항목에 자본이자비용 추가 요구
 - 블리비아 기고문 검토 : 발전단계가 상이한 국가간의 비용차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원가에 입각한 정산요율 분담이 적용되어야 함(국제전화 비용이 선진국은 분당 0.3664, 개도국은 분당 0.7619 SDR로 조사됨)
 - 또한, 비용요소에 마케팅비용 포함
- D.140의 Title 결정

“Guidelines for the cost elements for determining international telephone accounting rates and accounting rate shares”
- Transit 부과금은 비용요소에서 제외키로 결정

- 과제별 작업방향 결정
 - Q.5/3 : 국제전화 서비스의 과금 및 정산원칙
- 지난 연구기간에 국제전화 정산요율에 대한 성공적인 연구수행으로 D.140이 채택되었으며, 금번 연구기간동안은 D.140의 완성작업 및 D.150, D.155 수정작업을 최우선 순위로 수행
- Q.6/3 : 국제 음향 및 TV 방송프로그램 전송회선의 임시 규정에 대한 요금원칙
- 현 권고안에서 정의된 요금 및 정산원칙이 음향 및 TV 프로그램 발전에 부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D.180에 대한 연구가 중간 순위로 수행
- Q.16/3 : 국제 Videoconference 서비스의 요금 및 정산에 관한 일반원칙
- 전 연구기간에 채택된 D.188에 대해서 기술과 시장의 여건의 변화를 반영 할 수 있도록 최우선 순위로 수행

5. WP 3/5 회의

- WP 3/5에 부여된 QUESTION의 제고
 - 관련 Liaison Statement의 속고
- 과제별 작업방향 결정
 - Q.7/3 : 이동단말기간에 제공되는 전기 통신들의 일반원칙
 - D.90의 계속적인 수정
 - FPLMTS(Future Public Land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에 대한 요금 및 정산원칙 개발
 - D.93의 계속적인 연구위한 Item 설정
 - D.91의 적용시 문제점
 - Q.17/3 : UPT에 적용되는 과금 및 정산원칙
 - SG1이 '93. 4월 회의에서 Draft 권고안 F.851을 채택하여 '94년신속승

인절차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됨. 이와관련 UPT의 요금부과와 빌링에 관한 Draft 권고안의 최종 Version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

6. 레포터에 할당된 연구과제 작업계획

- Q.15/3 : 권고안에서 다루는 요금과 정산 원칙의 용어정의
→ 새로운 전기통신서비스의 개발 및 구현으로 요금 및 정산분야의 관련 권고안에 새로운 표준용어 정의가 필요
- Q.20/3 : 지능망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응용에 관한 과금 및 정산 일반원칙
→ GVNS, 국제전기통신 요금카드서비스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Charge Card Service) 등 고려
→ SG1의 Q.4/1로 추진되어 작업 고려
→ Network 자원의 공유 및 고도화 (Advanced) 서비스의 향상에 부응한 IN의 요금 및 정산의 적용에 대한 원칙 가이드
- Q.22/3 : GVNS에 대한 요금 정산 원칙
→ GVNS는 커다란 잠재적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중망사업자와의 치열한 경쟁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 따라서, 사설임대회선과 교환서비스의 관계 및 ISDN의 기술을 GVNS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한 GVNS 서비스의 요금 정산원칙 개발이 추진

V. 차기 회의일정 확정

1. 1993년 회의

- 회의기간 : 1993. 11. 1~11.5
- 회의장소 : 스위스 제네바 ITU본부

◦ 세부일정

일자	오전	오후
11월1일(월)	WP 3/3	WP 3/3
11월2일(화)	WP 3/5	WP 3/5
11월3일(수)	WP 3/5	WP 3/5
11월4일(목)	WP 3/4	WP 3/4
11월5일(금)	WP 3/4	WP 3/4

2. 1994년 회의

- 회의기간 : 1994. 5. 31~6. 9, 12. 12~12. 15
- 회의장소 : 스위스 제네바 ITU본부
- 세부일정

일자	오전	오후
5월31일(화)	WP 3/3	WP 3/3
6월 1일(수)	WP 3/3	WP 3/1
6월 2일(목)	WP 3/1	WP 3/1
6월 3일(금)	WP 3/4	WP 3/4
6월 6일(월)	WP 3/4	WP 3/4
6월 7일(화)	WP 3/4	WP 3/2
6월 8일(수)	WP 3/2	WP 3/2
6월 9일(목)	총 회	총 회
12월12일(월)	WP 3/5	WP 3/5
12월13일(화)	WP 3/5	WP 3/5
12월14일(수)	WP 3/5	WP 3/5
12월15일(목)	WP 3/5	WP 3/5

VI. 참석소감

ITU TS SG3회의가 1993. 6. 14~6. 18까지 스위스 제네바의 ITU 본부에서 의장 B. ROUXEVILLE(프랑스), 부의장 T.MATSUDAIRA(일본), J.F.PAYMANS(네덜란드)의 주제하에 5일동안 열렸다.

총회가 아닌 일개 Study Group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60개국 160여명의 많은 참석율을 기록했다.

이는 SG3 회의가 기술분야의 표준화가 아닌 “요금 및 정산원칙”이라는 분야로 각 사업자의 경제적, 재정적인 이익문제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날로 심화되는 통신시장의 경쟁환경 하에서 일부 선진국들이 압력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모든 회원국가간에 더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각 국가는 관련 전문가를 선정하여 회의에 자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도 급변하는 국제통신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특히, Regional Tariff Group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내 또는 국제 요금정산에 우리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